

## 답 변 서

- 질의의원 : 도원길 의원
- 질의일시 : 2004. 12. 3
- 답변공무원 : 허가과장 윤창식
- 질의내용 :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과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는 어떤 경우에 설치하는지 ?
  
- 도원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.
  
-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진·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2조 「별표16」 규정에 의거 자동식 세륜시설 또는 수조를 이용하여 수송차량을 세륜하는 시설중 사업장 편의에 따라 1가지 시설을 설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됩니다.
  
- 그 방법중 2가지의 시설을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면
  - 첫째로 세륜시설설치 기준에는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르러에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자동식 세륜시설이 있고,
  - 둘째로는 수송차량의 1.2배 이상되는 수조의 넓이와 수조의 깊이가 20cm이상이고, 수송차량 전장의 2배이상 길이로 설치하여 흙 등을 제거하는 수조를 이용하는 세륜시설이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답변드립니다.

2004년 12월 4일

허가과장 윤창식

